

企 業 倫 理 와 法

梁 承 圭*

차 례

- I. 머리말
- II. 기업과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반성
- III. 법과 기업의 관계
 - 1. 법의 기초개념
 - 2. 법과 기업의 관계
- IV.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 1. 기업윤리의 뜻과 한계
 - 2. 윤리경영
 - 3. 윤리강령
- V. 맺는 말

* 서울대 名譽敎授 · 가톨릭대 待遇敎授, 法學博士

I. 머리말

해방 후 남북분단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그래도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어깨를 겨루는 삼성전자, LG전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와 같은 큰 기업이 버팀목이 되고 있음은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기업의 건전한 성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없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하여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사정권을 거쳐 민주화의 뿌리가 내린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타락으로 인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총체적인 부패로 얼룩져 왔다.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지탱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또 참여정부에 들어와 검찰이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은 다행이다.

정치권의 보복이 두려워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었다¹⁾는 풍토를 바로 잡으면 사회적 부패를 청산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정직한 풍토를 조성하여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일부 기업의 잘못을 부각시켜 기업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정경유착을 털고 기업도 정도경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기업윤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²⁾은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업이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크든 작든 그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목적에 따라

1) 지난 2004. 4. 17.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 15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회사관계자는 “정치보복이 두려워 달라는 대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조선일보, 4월 28일자, A12면). 이것은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하지 못한 데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판치금융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2) 정희철,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제문제”, 서울대 『법학』 15권1호, 1973; 『기업법의 전개』, 박영사, 1979, 99면 이하 참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이윤을 추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할 뿐 아니라 그 기업의 종업원의 복지나 생활향상을 꾀하고, 소비자 등에게 좋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기업은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³⁾

미국에서 1916년 8월 영업연도가 개시되면서 Ford 자동차회사는 영업이 번창하여 50만대 이상의 자동차의 판매와 6천만달러 이상의 이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1915년도에 배당가능이익의 60%만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시설확장 등 재투자비용으로 유보했다. 이에 소수주주들이 그 이상의 이익배당을 요구한 사건에서 Henry Ford 사장은 “나의 포부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 산업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그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도록(build up their lives and their homes) 돕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기업에 유보해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다.⁴⁾ 20세기 초 아직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이 논의되기 전에 Ford가 경영철학의 방향을 제시한 혜안(慧眼)은 부럽기도 하다. 1932년에 Harvard 대학 Dodd 교수는 “회사경영자는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및 일반 공중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⁵⁾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3) 교황 요한 바오로 II세는 2004. 3. 4. 교황청정의평화위원회 주최 기업경영자: 사회적 책임과 세계화(“The Business Executive: Social Responsibility and Globalization”) 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기업의 적정한 이윤추구와 수많은 인류가족이 겪고 있는 가난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Christians charged with responsibility in the spread of business world are challenged to combine the legitimate pursuit of profit with a deeper concern for the solidarity and the elimination of the scourge of poverty which continues to afflict so many members of the human family”.

4) Robert W. Hamilton, *CORPORATIONS Cases and Materials*, 4d., West Publishing Co. 1990, p.379(Dodge v. Ford Motor Co. Supreme Court of Michigan, 1919. 204 Mich. 459, 170 N.W. 668).

5) David S. Ruder, “PUBLIC OBLIGATIONS OF PRIVATE CORPORATIONS”, *114 Univ. of Pennsylvania L. Rev.*(1965) p.211(Dodd,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45 HARV. L. REV.*(1932) 1145, 1156. 이 논문은 Berle Jr.,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41 Harv. L. Rev.*(1931) 1049와 더불어 ‘회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II. 기업과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반성

기업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로서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영업을 하는 경제적 조직체로서 개인이 영위하는 개인기업과 출자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는 법인기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대규모기업은 거의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업은 주식회사이다. 이러한 기업에 출자하는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으나 그 이윤은 출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품위와 창의성을 살리고 고객과 공동선(common good)의 요구에도 이바지해야 한다.⁶⁾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여 영리활동을 벌이는 살아있는 활력체(lebendige Energie)로서 독자적으로 신용과 명성을 얻고 있는 사회적 실체이다.⁷⁾ 그러나 기업은 인간의 조직(human organization)으로서 그 활동을 위하여 경영자를 비롯한 출자자(주주), 종업원, 판매인, 공급자, 고객 및 보다 광범한 사회(broader society)를 필요로 하고 있다.⁸⁾ 이에 따라 기업경영은 언제나 이를 받쳐주는 사람에 의하여 이뤄지고, 그 잘잘못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여 세계에서 상위권의 경제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도외시함으로써 수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불량식품, 유해과자 또는 가짜제품 등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1993년 일부 기업에 의한 낙동강의 폐놀유출로 인한 식수오염을 비롯한 산업쓰레기의 불법매장 등으로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1994년과 1995년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잇달아 붕괴된 참사를 겪었으며, 군납비리 등 각종 비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윤만을 생각한 그릇된 현상에서 온 사회병리이다.

6) 교황 요한 바오로 II세의 앞의 메시지 참조.

7) 양승규, 『상법의 논점』, 삼지원, 2000, 195면 참조.

8) Lawrence E. Mitchell, "Cooperation and constraint in the modern corporation: An inquiry into the causes of corporate immorality", *73 Tex. L. Rev.*(1995), p.477.

특히 역대 정권의 타락과 정경유착으로 인한 권력형 비리가 이어져 사회적 부패가 부풀어지고 도덕성이 상실되어 갔다. 전두환, 노태우가 청와대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챙긴 것은 권력형 비리의 극치이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이러한 사회현상과 맞물려 일부 기업에서는 이른바 비자금을 축적하여 이를 부패의 고리로 악용하여 사회병리를 키워왔고, 또한 분식회계로 거품(bubble)을 부풀려 경영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것은 한 보철장이나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기업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 1997년 외환(IMF)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으로 곤욕을 치르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⁹⁾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당사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뿔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낳았고,¹⁰⁾ 2003년에는 SK글로벌의 2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처리가 드러나¹¹⁾ 경제계에 미친 파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2002년의 대선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에 이르러서 기업의 비자금이 불법적인 대선자금으로 이용되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¹²⁾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도덕성의 회복 없이는 이를 떨쳐버리기 힘들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윤리문제는 기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있다. 지난 3월 25일 은행연합회는 “2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가 382만 5269명에 달해 1월말보다 5만6964명(1.5%) 늘어났다”¹³⁾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윤리현상을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카드빚 등으로 생긴 개인신용불량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그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9) 양승규, “기업의 부실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서울대 『법학』 39권1호, 1998; 『상법의 논점』, 131면 참조.

10) 가령 구조조정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그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임직원의 과도한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모건선회사의 관리인이 정치헌금으로 유용한 것은 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11)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K글로벌 임원 4명에 대한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제재조치, Y회계법인에 과징금 3억1960만원 부과, 관련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 조치를 건의하고, 또한 SK해운 임원 3명에 대한 검찰고발조치를 취했다(2003. 8. 20. 금융감독원 자료).

12) 대검중수부는 모 건설업체의 회장이 27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혐의 외에 70억원 상당의 법인세 포탈혐의가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4년 4월 7일자, 8면.

13) 조선경제, 2004년 3월 26일자, B2면 참조.

카드회사의 카드납발과 정부의 감독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현상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정치사회는 언제나 부정한 금전거래를 미끼로 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이기고 보아야 한다는 정치풍토는 기업에 자금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비자금이라도 조성하여 공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사회적 부패를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고 많은 기업이 외국의 자본에 의하여 잠식되고 있고, 게다가 2001년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잡겠다고 나선 이른바 정치인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려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일부 기업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비리에 관련되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기업만을 나무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회가 썩었다 하더라도 비리에 휘말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유한양행과 같이 바른 경영으로 모범을 보여준 수많은 기업이 우리 경제를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기업의 발전 없이는 실업문제 등 사회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 일부 기업의 부실경영과 비리로 경제적 혼란을 겪은 아픔을 되새기고, 국가는 물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인들도 기업이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02년 1월에 정부는 전경련과 함께 기업윤리경영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2004년말까지 500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경영 자가진단 모델을 보급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 그리고 기업도 생존을 위하여 윤리경영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윤리현장을 채택하는 등 윤리경영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¹⁵⁾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윤리경영으로 건전한 기업풍토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노사가 화합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14) 허진, 윤리경영의 질 측정, LG 경제연구원, 주간경제 687호, 2002. 8. 7 참조.

15) 대한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 글로벌기업의 윤리경영 현황과 경영성과연구, 2004. 2 참조; 전경련 윤리경영T/F팀 편, 윤리경영 이해와 실천, FKI미디어, 2003, 126면(전경련이 상장사 등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윤리실태조사에 의하면 2002. 8. 현재 조사대상 대기업의 49.7%가 기업윤리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법과 기업의 관계

1. 법의 기초개념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법언이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서로 이웃을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참으로 질서 있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이해의 충돌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하여 마련된 규범이 윤리, 도덕 및 법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법은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고, 그 법이 존중되고 잘 지켜지는 사회는 정의롭고 질서가 바로 서고 평화가 깃들게 된다. 그리하여 법은 사회의 평화로운 질서를 위하여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로마시대의 율피아누스가 “법의 계율은 품덕 있게(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각 사람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고,¹⁶⁾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동선으로 질서 지우는 것이 법의 근거이고, 따라서 법은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⁷⁾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의 원리가 무엇이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민주국가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성문법국가에서 법의 중심은 물론 실정법에 있다. 실정법은 입법기관(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제정하여 정부가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법이라고 할 때에는 성문법뿐 아니라 관습법, 각종 협약이나 조리 등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법실증주의자는 법과 도덕을 분리하고 있으나¹⁸⁾ 법은 정의의 상징(symbol of justice)으로서 국가사회의 공동선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정법도 사회윤리와 도덕의 뒷받침이 있을 때에 비로소 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법은 결국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 인간의 생활관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회규범으로서 규제의 목적이거나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사

16) 최병조, 『로마법연구(Ⅰ)』, 1995, 학설류집 Digesta 1권1장 제10법문.

17) David Lyons, *Ethics and the rule of law*, Cambridge, 1983, p.8.

18) *Id.*, p.63.

람들은 그 각종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도 사회적 실체로서 많은 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또한 이를 어길 때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다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형식 논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도 참작하여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2. 법과 기업의 관계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국가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철도사업이나 우편업무와 같은 특수한 사업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통신, 전력, 도로, 주택사업 등 각종의 중요한 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기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국가는 항공, 해운, 도로운송과 같은 운송사업이나 보건, 위생과 관련된 일정한 사업은 행정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 있으며(항공법 제112조, 해운법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약사법 제26조 등), 또 은행, 보험, 증권 등 각종의 금융사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본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그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참조).

기업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활동범위는 매우 넓고, 그 기업의 성격에 따라 그것을 규제하는 법도 각각 다르다. 이에 따라 법과 기업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으나, 기업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법은 상법 이외에도 민법, 증권거래법, 세법, 노동관계법, 소비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및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상법과의 관계 :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제169조, 제171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큰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법은 상인의 영업조직이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는 법인으로서는 정관에 의하여 그 목적이 정해지고, 권리능력이 제한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는 영업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므로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⁹⁾ 기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술혁신 등으로 양질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회 또는 국가에 협조하고 공공의 복지, 자선단체 또는 학술기관에 기부하는 행위 등도 허용되어야 한다.²⁰⁾ 그리하여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자연인과 같은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업의 영업활동은 경영기관이 맡고 있고, 이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충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 건전한 기업풍토는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제382조의3)를 규정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399조, 제401조 참조). 지난 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의 병리현상과 맞물려 부실한 기업경영에 대하여도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앞으로는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서도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규제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제1조 참조).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 이하).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이나 과징금의 부과 등으로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 각종 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19) 양승규, 앞의 책, 34면 이하 참조.

20) 미국의 MBCA 제3.02조(13)호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도 “공공의 복지, 자선, 학술 또는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제1항 참조). 이것은 국가가 각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그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경쟁은 국내시장에서 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에 대한 규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의 지나친 간섭은 기업의 창의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 부패방지법과의 관계 : 부정부패는 사회기강을 해치고 황폐하게 만드는 해악으로서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일이다. 200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부패를 막아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의 책무이다. 기업이 부정한 거래를 하거나 이권을 노려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정치인에게 불법자금을 건네는 것 등은 모두가 인격을 파괴하는 부패행위이다. 이 법은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라고 규정하여 기업에 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OECD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IV.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1. 기업윤리의 뜻과 한계

국어사전은 윤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곧 실제의 도덕 규범이 되는 원리²¹⁾라 하고, 영어사전은 윤리(ethics)는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를 다루고, 도덕적 의무와 책무를 다루는 원리²²⁾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윤리는 인간이 특정한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했거나 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의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사회는

21) 이희승 감수,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제5판, 민중서림, 2001, 1963년.

22)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1, p.389. **ethic**: The discipline dealing with what is good and bad and with moral duty and obligation.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정하여 인간행위에 적용할 원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윤리를 기업에 적용할 때 이를 기업윤리(business ethics)라고 부른다. 이것은 이러한 행위의 기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²³⁾

윤리는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가 무엇이나(what is and what ought to be?)는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와 연관되는데²⁴⁾ 결국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무엇이 옳고 나쁜가를 판단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일종의 도덕규범(code of morals)이 윤리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인 하나,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대응하는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윤리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경영담당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귀속시키므로 그들이 기업의 이름으로 또는 기업을 위하여 행한 행위가 윤리적으로 합당한가를 다루는 것이 기업윤리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의 유일한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²⁵⁾ 이에 따라 경영자는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길 때에 그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거래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를 아울러 판단하여야 한다. 가령 기업이 뇌물을 바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거래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이다. 그 동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그릇된 관념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등한시한 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부패를 키웠으며,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충실의무(제382조의3)를 비롯한 각종의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민법 제2조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모

23) Vernon A. Musselman/Eugene H. Hughes, *introduction to modern business*, 6d., Prentice Hall, 1973, p.79.

24) Fred Luthans/Richard M. Hodgetts, *Readings on Current Social Issues in Business*, The Macmillan Co., 1972, p.29.

25) Mitchell, *op.cit.*, p.483.

범사업회사법(MBCA) 제8.30조a항은 “이사는 이사회 의 위원으로로서의 의무를 포함하여 이사로서 (1) 선의로, (2) 같은 지위에 있는 통상적인 신중한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기울이는 주의로써, 그리고 (3)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법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사의 일반적 행위기준(General Standards of Conduct for Directors)을 규정하고, 제8.42조a항은 임원의 행위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은 기업의 이사 등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성실하게 집행하였으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기업윤리에도 부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윤리는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²⁶⁾ 하더라도 이사가 선의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면 그 결과가 경기변동 등으로 비록 좋지 않게 나타났더라도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윤리경영

(1) 윤리경영의 환경: 정경유착으로 인한 사회적 부패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고, 기업의 불법자금의 문제가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기업풍토도 바뀌고 있다. OECD 국제상거래비물방지협약은 1997년에 채택되어 1999년 2월에 발효되었고, 미국의 윤리임원협회(EOA: Ethics Officer Association)는 “기업윤리경영표준안”을 제정하여 이를 세계표준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세계적인 관심사이고,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에서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윤리경영은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기업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윤리경영이 아니면 기업의 생존도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비록 시작단계라 하더라도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²⁷⁾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나 IBRD의 자금공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

26) Musselman/Hughes, *op.cit.*, p.80.

27) 박일근 기자, “윤리경영 이젠 기업생존에 필수”, 한국일보, 2004년 2월 27일자(경제), 32면 참조.

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을 요구받아 1999. 12. 상법 개정에서는 감사위원회(제415조의2)를 신설하여 감사와 선택적인 기관으로 하도록 하고,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사외이사(동법 제191조의16)와 감사위원회(191조의17)를 의무화했다. 이것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감사체계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을 따로 두도록 하여²⁸⁾ 준법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서는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및 책임감(accountability)이 강조되어²⁹⁾ 이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로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들고 있다.³⁰⁾ 독립적인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제대로 감독하고 감사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이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기업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에 따라 철저히 가리는 것은 윤리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개선만으로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이나 외감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2중3중으로 그 감사체계를 세워 공정하고 적법한 회계처리를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자금으로 제공된 기업의 비자금이나 2003년의 SK글로벌의 2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처리가 생겼고, 게다가 포춘의 7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미국의 엔론(Enron)사가 분식회계로 파산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³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아무리 잘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 효용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하여 이사 등 경영자들이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갖

28) 은행법 제23조의3, 보험업법 제17조,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참조.

29) A Report to the OECD by The Business Sector Advisory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Improving Competitiveness and Access to Capital in Global Markets*, OECD 1998, p.39.

30) SK(주)가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독립적·효율적 이사회를 구성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지배구조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2004. 2. 13, 2004. 2. 23. SK주 홍보자료).

31) 브라이언 크루버 지음/정병현 옮김, 탐욕의 실체(Anatomy of Greed), 2003, 영진닷컴 참조.

추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³²⁾ 다시 말하면 기업의 윤리경영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기업의 임직원이 먼저 변혁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에 임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를 비롯하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건전한 기업경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도 기업의 윤리경영을 이끌어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2) 윤리경영의 뜻과 요건: 윤리경영의 뜻에 대하여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시장의 윤리, 즉 시장의 질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³³⁾”라고 하여 시장윤리에 따른 기업경영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한 보고서는 국내에서 윤리경영이라고 일컫는 사회적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기업과 기업의 내·외부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다양한 정의를 고려하여 “윤리경영은 사회가 기업에 가진 윤리적, 법적, 상업적, 공공의 기대를 충족하는 차원을 초월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⁴⁾

윤리경영은 기업경영자가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업경영에 임하는 것이고,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면 그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지배구조와는 관계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업의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기업경영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것이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때에는 윤리경영이라 할 수 있으나,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사외이사 등 독자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면 이는 윤리경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출자자는 물론 내부종사자와 거래당사자, 고객 등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영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에서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것은 기본적 덕목이라 할 것이다. ‘자본은 노동 없이 있을 수 없

32) Mitchell, *op.cit.*, p.505. The ALI appears to understand the propriety of permitting corporate directors to act as morally autonomous persons.

33) 전경련, 앞의 책, 18면.

34) 산업정책연구원, 윤리경영 인덱스 개발 및 실태평가<결과보고서, 2003. 11>, 산업자원부, 5~7면 참조.

고 노동은 자본 없이 있을 수 없다'³⁵⁾는 소박한 진리는 노사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에 의하여 기업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상호신뢰의 기반이 구축되고 쟁의 없는 기업으로 성장하면 거래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시장의 기준의 잣대로 윤리경영이 최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³⁶⁾도 윤리경영이 기업생존에 필수요소이고, 동시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⁷⁾

개인이든 기업이든 거래사회에서 신용을 잃으면 지탱하기 어렵다. 기업이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다. 약품이나 식품 광고에서 현혹하는 사실을 선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³⁸⁾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기업의 광고와 홍보는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 또는 경영활동에 가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³⁹⁾ 과대광고로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것은 기업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제1차적 목적이고,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시장질서에 따라 양질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수 있다. 최소 비용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이 가령 비용절감을 위하여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폐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의 범죄행위이다.⁴⁰⁾ 따라서 기업이 법에서 요구하는 정화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폐수처리를 함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였다면 이는 법규위반으로서 기업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정화시설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비용을 절감하여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유로 자선단체 등에게 기부하는 것

35)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 14항.

36) 김기현, “윤리기업의 시대”, CEO Report, LG주간경제 2002. 8. 7, 23면.

37) 산업정책연구원, 앞의 보고서, 2~3면, 이종영, 제2관 『기업윤리 - 이론과 실제 -』, 삼성사, 1999, 40면 참조.

38) See, Musselman/Hughes, *op.cit.*, p.81.

39) 삼성그룹 윤리강령 1-7 참조.

40) 미국에서 근 40년 동안 폴리염화비페닐(PCB)을 독점 생산해 온 Monsanto는 2002년 수만 파운드의 PCB를 생산공장 근처 계곡에 폐기했고, 수백만톤을 허가받지 않은 매립지에 묻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유기했다는 평결을 받았다고 한다(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767호 “영혼이 있는 기업” 서평에서 인용).

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오히려 범죄행위로 얻은 돈으로 자기의 생색을 내는 파렴치한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윤리경영에서 회계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상의 재산과 손익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고(상법 제29조 참조), 이를 통해서 각 이해관계인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기업의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⁴¹⁾ 결산재무제표는 이를 공시하여 주주와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48조).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사, 감사 또는 감사인이 그 직무상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영업실적의 부진을 은폐하고 오히려 이익이 생긴 것처럼 꾸미는 분식회계로서 경영실패를 호도하거나 회계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다. 회계조작은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일종의 사기행위로서 상법(회사법)이나 외감법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상법 635조제1항9호, 외감법 제20조제1항8호)일 뿐 아니라 기업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고객관계를 악화시켜 결국에는 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⁴²⁾

기업의 윤리경영은 결국 이사 등 경영자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경영자가 시장질서를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윤리경영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이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건전한 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윤리경영을 외면할 때에는 경영자는 물론 그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령 경영자와 기업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 그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기업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충실의무(fiduciary duties)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사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⁴³⁾ 또한 경영자가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

41) 기업회계기준 제3조1호; 외감법은 회사의 회계처리의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외감 13조).

42) 양승규,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톨릭법학』 제1호, 가톨릭대법학연구소, 2003, 121면.

43) Harry G. Henn/ John R. Alexander, *Laws of Corporations*, 3d., West, 1983, p.632f.

지 아니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기업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것은 바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기업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상법 제399조, 제401조 참조)은 물론 기업의 파탄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윤리강령

(1) 윤리강령의 채택 : 기업의 윤리경영은 사회병리현상의 청산과 더불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으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하여 각 기업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⁴⁴⁾ 정부는 윤리경영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진단방안을 마련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윤리경영의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⁴⁵⁾

윤리강령은 그 기업의 기본이념에 따라 임직원이 지키고 따라야 할 윤리기준을 마련한 행동지침이다. 윤리강령은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경련의 윤리현장을 먼저 소개하고, 몇몇 기업의 예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전경련의 기업윤리현장 : 이 현장은 1999. 2. 11. 채택된 것으로 전문(前文)과 행동지침 1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 기업의 사명을 바탕으로 “기업은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경영과 기술을 혁신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경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창달하여 국민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동지침 13개항은 “1.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2. 창의와 혁신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다. 3. 투명경영을 하는데 노력한다. 4. 정치

44) 이종영, 앞의 책 605면 이하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윤리현장(1999. 2. 11), 현대그룹 기업윤리강령(1995), 삼성그룹 윤리강령(1996), 대우증권 임직원윤리강령(1998. 4), LG그룹 윤리규범(1995), 포항제철윤리강령(1993) 등이 수록되어 있고, 전경련, 앞의 책 256면 이하에서는 그 채택연대는 밝히지 않고 신세계윤리규범, 국민은행윤리경영, POSCO 윤리규범, 두산그룹 기업윤리강령, 코오롱 윤리강령, 해태제과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LG전자 일반원칙, KT 윤리강령, 삼성화재 윤리강령 및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다.

45) 산업정책연구원, 앞의 보고서 참조.

권 및 정부와 건전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 5. 전문 경영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6. 기업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을 한다. 7.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8. 소비자와 고객의 권익증진에 힘쓴다. 9. 모든 기업구성원의 이익을 향상시킨다. 10. 환경친화적 경영을 지향한다. 11.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12. 해외진출기업은 현지국의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현지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한다. 13. 이 현장을 준수하고 실천이 가시화되도록 공동 협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데 노력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전경련의 기업윤리현장은 기업이 투명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자유시장의 경제질서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가꾸어 나갈 것을 다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기업의 윤리강령: 포항제철 윤리강령(1993)은 “제1장 경영의 기본정신, 제2장 법과 윤리의 준수, 제3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제4장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기준”으로 짜여 있다. 현대그룹 기업윤리강령(1995)은 “하나.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모든 부조리를 배격한다.”로 시작하여, “자율경영체제의 정착,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통한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준수,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책임,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상의 정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현대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관의 확립에 앞장선다.”는 실천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LG그룹 윤리규범(1995)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을 위한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한다는 전문과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장 공정한 경쟁, 제3장 공정한 거래, 제4장 임직원의 윤리,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되었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서약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그룹 윤리강령(1996)은 서문에서 ‘21C 세계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제1장 삼성의 경제활동, 제2장 삼성의 사회적 역할, 제3장 삼성인의 직장생활로 나누어 각각 실천규범을 정하고 있다.

(4) 윤리강령의 실천: 각 기업의 윤리현장 또는 윤리강령은 그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임직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여 기업경영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윤리강령에 따라 기업경영이 이뤄질 때 그

기업의 앞날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강령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켜야 할 기준이고, 부당한 압력도 그 윤리규범을 내세워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임직원 모두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틀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동료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부정을 감싸는 것은 또 다른 부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내부신고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⁴⁶⁾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력의 타락과 횡포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맺지 않고는 원활한 기업경영이 힘들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일부 기업에서 정치권에 건넨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자금이 그 윤리강령이 채택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풍토 속에서 기업이 윤리규범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은 하나의 장식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임직원 모두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행동지침이다. 기업이 투명한 경영으로 부정한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모든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그 현장을 지킬 때에 우리 기업의 윤리경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기업문화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V. 맺는 말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이다. 기업은 출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회적 실체이다.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민주국가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질서를 지키고,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때에는 건전한 기업풍토도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하여 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윤리를

46) 김기태, “윤리경영의 실천포인트: 내부신고제도”, LG주간경제, 2002. 10. 2, 31면 참조. 부패방지법 제26조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삼성윤리강령 서문 2의 2)는 “삼성인 상호간에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고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10월에 발표된 영국 가톨릭주교회의 성명서 공동선 40항은 “복음화는 언제나 불의한 사회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복음화의 주요 과제의 하나는 그러한 불의들을 고발하고 맞서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벗어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부정경쟁 등 부당행위를 할 때에는 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건전한 기업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기업은 물론 관계당사자들이 그 법을 지키고, 윤리경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국가는 법적인 제도가 기업의 걸림돌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기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또한 기업이 윤리경영으로 정당한 이윤을 창출하고 출자자는 물론 근로자,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기업의 임직원은 “소유보다는 존재”를 우선(the priority of “being” over “having”)⁴⁷⁾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윤리경영을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동안 사회적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정경유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기업윤리를 외면하고 부패의 고리에 빠지면 그 기업은 물론 사회경제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희생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처럼 IT산업이 발전한 정보화 시대에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고도의 기업윤리의 성취는 기업의 출자자는 물론 경영자들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 국가는 기업의 환경개선에 힘쓰고, 기업경영자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갖추면 기업의 윤리경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이 투명한 경영으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출자자와 종업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국가경쟁력의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건전한 기업 없이는 경제발전을 기할 수 없다. 기업이 살지 않고는 실업문제의 해결도 어렵다.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하고, 기업이 윤리경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47) 교황 요한 바오로 II세의 앞의 메시지 참조.

Business Ethics and Law

Yang, Seung-Kyu*

Business enterprise is a subject of economic for making of a profit with personal and material facilities. In 1932, Professor E. Merrick Dodd, Jr. examined the proposition that the corporate managers “should concern themselves with the interests of employees, consumers, and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he stockholders”. It was the start of discussion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orporation.

In Korea, social corruptions caused by unlawful political fund reflected business management. From now on the business enterprise should recover its trust by keeping business ethics. The business should respect both for the dignity and creativity of their employees and customers and demands of the common good.

A Capitalistic free market system can accomplish the sound business environments if each firm in the country voluntarily keeps the market rules and ethical values, and applies fair and transparent management.

Business managers should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by putting a priority of ‘being’ over ‘having’ and by managing their firms on the basis of laws and principles. We should not accept or ignore the unlawful category between policy and business any longer that has been the major reason for social corruption so far. All members of our society as well as all business firms should keep the laws and principles and raise our ethical standards in the days of high technology and information society. Otherwise, we cannot avoid the social disaster that may be caused by the corrupted behavior and unlawful competition.

The achievement of high business ethics is pending on the strong will not only from managers but also from shareholders. For a successful ethical management, a nation should try to improve its business environments and both managers and employees are willing to keep the ethical principles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 Emeritus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 and The Catholic Univ.of Korea